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86호, 2026. 3. 17. 공포, 2026. 6. 18. 시행)됨에 따라,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및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이하 “사업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사업관리단 및 전담기관의 설치·지정 및 운영, 대미투자 사업의 선정 절차, 한미전략투자공사 및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제2조)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정의와 기준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규정하고, 그 밖에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미국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나. 운영위원회 및 사업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5조 내지 제12조)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의 법률상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정부위원의 구성과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등을 규율하고, 각 위원회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설치하는 전문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위원의 제적·기피·회피, 해촉, 수당 및 여비의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

다. 사업관리단 및 전담기관(제13조 내지 제15조)

사업관리단의 구성과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방식 및 업무 등을 규정하고, 사업관리단이 대미투자 후보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등의 검토를 위해 수행한 외부 용역 비용과 관련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직접적 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신청 및 지원 절차에 관하여 정함.

라. 대미투자 사업의 선정 절차(제16조)

사업관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에 심의·의결 요청시 보고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대한민국이 발굴하여 미국 투자위원회에 대미투자 대상으로 제안할 후보사업에 관한 미국과의 예비적 협의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

마. 한미전략투자공사 및 한미전략투자기금(제17조 내지 제29조)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운영기간을 설립 등기일로부터 20년으로 규정하였으며, 공사의 자본금 출자 방식, 업무 위탁기관, 기금채 발행 및 관리 절차, 계정간 예수·예탁 절차,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공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공사로의 직원 파견에 관한 사항, 과태료 부과 기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6. 04. 20. ~ 06. 0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업적 합리성 기준) ① 법 제2조제5호에서 “해당 대미투자의 존속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리금 상환을 위한 충분한 현금흐름”이란 해당 대미투자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대한민국으로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으로 해당 투자에 대한 원리금을 충당할 수 있는 현금흐름을 말한다.

② 제1항의 해당 대미투자의 예상 존속기간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 협의하여 결정한 존속기간을 말한다.

③ 제1항의 원리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은 미합중국 발행 만기 20년 국채의 고정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비율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가산금리는 자금조달 비용 및 위험 프리미엄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미국과 협의를 통해 정한다. 이때 산업통상부 장관은 자금조달 비용 등에 대한 한미전략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업적 합리성 판단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준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미국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3조(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외국법인 등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내국법인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할 것
2.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권한을 보유할 것
3. 그 밖에 계약, 약정 또는 사실상의 관계에 따라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

제4조(대미투자 등의 원칙) 법 제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대미투자 사업과 관련하여 상업적 생산 개시가 예상되는 시점으로부터 20년 이내 대한민국에 분배되는 현금흐름이 해당 대미투자자에 대한 원리금에 미달할 것이 합리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프로젝트 성격 등을 감안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 협의를 통해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해당 기간 이내에 원리금 회수가 어려울 것이 합리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외교부장관
2. 기획예산처장관
3. 금융위원회위원장
4. 그 밖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안전별로 지명한다.

③ 법 제6조제2항제3호에서 “금융·투자 분야 또는 전략적 산업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정부, 공공기관,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서 금융·투자 분야 또는 전략적 산업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국내 또는 미국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 금융·투자 분야 또는 전략적 산업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재직하면서 금융·투자 분야 또는 전략적 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4. 국제협상, 외교, 통상, 안보, 공급망, 거시경제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금융·투자 분야 또는 전략적 산업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와 연구경력의 합이 10년 이상인

사람

6. 그 밖에 금융·투자 분야 또는 전략적 산업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공사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거나 공사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분야별 전문위원회 운영)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재무·금융·외환 분야
2. 산업·기술·투자 분야
3. 리스크·법률·규제 분야
4. 외교·통상·안보·공급망 분야
5. 그 밖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1. 운영위원회 위원
2. 제1항 각 호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공사는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공사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거나 공사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사업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

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외교부 제2차관
2. 기획예산처 차관
3.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4. 그 밖에 사업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사업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안전별로 지명한다.

③ 법 제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사항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미국내 현지법인 설립 또는 생산시설 투자, 인수·합병 또는 합작투자 사업을 총괄·관리하였거나 핵심 실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대규모 해외 투자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검토, 기술적 타당성 분석, 투자심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미국 변호사, 미국 공인회계사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자격을 갖추고 있으면서 미국 연방·주 정부 또는 미국 공공기관과 투자·통상 관련 규제 대응 업무 또는 법률·회계 자문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해외투자자와 관련된 정책금융기관이나 국제금융기구에서 해외투자 지원, 사업성 검토 또는 리스크 평가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경험

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금융·투자 분야 또는 전략적 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사업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9조(사업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사업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사업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사업관리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통상부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사업관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사업관리위원회는 업무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사업관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관리위원회 및 한미 협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⑥ 법 제7조제1항제8호에서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검토와 관련하여 미국과 예비 협의가 필요한 사항
2. 법 제7조제1항제3호의 검토와 관련하여 미국과 예비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분야별 소위원회 운영) ①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사업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첨단산업 및 공급망 분야 : 반도체, 의약품, AI·양자컴퓨팅
2. 에너지 및 핵심광물 분야
3. 조선 분야
4. 투자·재무·회계 및 리스크 관리 분야
5. 법률 및 규제 대응 분야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 소위원회는 분야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사업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사업관리위원회 위

원장이 지명한다.

1. 사업관리위원회 위원

2. 금융, 법률, 규제, 회계, 세무 또는 전략적 투자 분야와 관련된 경험
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주요 경제단
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사업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사업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
업통상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
는 3급 이상 공무원 중 한명을 소위원회의 간사로 지명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관리위원회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관리위
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사업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은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사업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법 제6조제2항제3호”는 “법 제8조제2항제3호”로 본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운영위원회 또는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

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3조(사업관리단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관리단은 산업통상부차관을 단장으로 둔다.

② 단장은 사업관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사업관리단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사업관리단의 단원은 산업통상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연구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소속 임직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관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⑤ 사업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략적투자 후보 사업 검토보고서 작성(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검토 및 전략적·법적 고려사항, 조선협력투자의 원활화 방안, 전략적투자 후보 사업에 참여할 후보자로서 미국에 추천할 법인·단체·기관, 전략적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보고자료 작

성

3. 전략적투자 후보 사업 관련 대미 협의를 위한 협의팀 구성
 4. 전략적투자 후보 사업 관련 대미 협의전략 수립 및 이행
 5. 전략적투자 후보 사업 관련 미국에 대한 자료 요구
 6. 대미 협의 과정에서 미국이 제안한 사업 자료에 대한 정밀 검증 및
재무·회계·법률·세제·환경 등 리스크 분석
 7. 사업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8. 그 밖에 사업관리단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검토 비용의 지원) ① 사업관리단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6호의 검토를 위한 외부 용역과 관련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직접적 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비용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외부 용역 시행계획서(사업설명서,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를
포함한다.)
 2. 예산 요구서
 3. 산출내역서
 4. 그 밖에 공사가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요청하는 자료
- ② 공사는 기금을 통한 제1항의 직접적 비용 지원의 적정성 및 필요성

을 검토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하여 사업관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으로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는 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범위 내에서 사업관리단에 해당 용역에 대한 지급확약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사업관리단은 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용역계약서 사본 또는 용역 계약에 관한 자료를 즉시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관리단과 용역 수행자, 공사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의 계약상 의무는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며, 용역의 수행 및 계약의 이행에 관한 책임은 사업관리단과 용역 수행자가 부담한다.

⑥ 사업관리단은 용역 수행자로부터 용역대금청구서를 받게 될 경우, 공사가 정하는 대금 지급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공사는 제6항의 대금 지급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용역 수행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대금의 지급은 계약 내용에 따라 용역 수행 단계별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⑧ 사업관리단은 용역을 종료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사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 수행 결과물
2. 검수조서
3. 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공사가 요구하는 자료
4. 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대금 집행 및 용역 수행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요구하는 자료

제15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사업관리단 단장은 전략적투자 사업 검토 수행역량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3. 금융·투자 또는 전략적 투자 관련 업무수행 경험이 있는 법인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토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관리
2.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토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연구 및 용역계약 발주·관리 지원
3. 그 밖에 사업관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사업관리단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중대한 부실 또는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3.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해진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대미투자 사업의 선정 절차 등) ① 사업관리위원회는 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경우, 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대한 심의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관리위원회는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대미투자 후보사업에 대해 법 제3조제3항,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사업의 선정 또는 추진의사에 대한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후보사업의 전략적 고려사항으로서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미국 투자위원회에 대미투자 대상으로 제안할 사업을 검토하기 위하여 미국과의 예비적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협의 이전에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예비적 협의 결과에 대한 사후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자본금 출자) 법 제19조에 따른 출자는 연차적으로 나누어 현금으로 납입한다.

제18조(공사의 운영기간) 법 제23조에 따른 공사의 운영기간은 설립등기
일로부터 20년으로 한다.

제19조(리스크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리스크관
리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30조제3항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그 밖에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0조(내부통제) ① 공사는 준법감시인의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
하여 준법감시인이 임원·직원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금융회사
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을
말한다.

제21조(직원의 파견 등) ① 공사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
계기관 또는 단체의 소속 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해당 기
관에 재직한 상태에서 공사에 임시 채용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파견 또는 임시채용은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실
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파견 또는 임시채용의 형태로 공사에서 근무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33조, 제47조, 제53조를 적용할 때는 공사의 임
직원으로 본다.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39조제1항제6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투자 및 금융 지원 관련 기관”이란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말한다.

② 공사는 법 제39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미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공사는 업무 위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약을 위탁을 받을 기관과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범위 및 내용
2. 위탁업무의 기간
3. 위탁업무의 수행결과에의 보고
4. 계약의 변경·해약 및 위반 시의 조치
5. 그 밖에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공사는 위탁업무의 수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한미전략투자채권의 발행)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한미전략투자채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9조, 제20(제2항제8호는 제외한다.) 및 제21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출입금융채권”은 “한미전략투자채권”으로, “수출입

은행”은 “한미전략투자공사”로, “수출입은행장”은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으로, “법 제18조”는 “법 제34조”로 본다.

제2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공사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사는 기금의 운용 실적 및 현황을 매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계정 간 예수 및 예탁) ① 법 제43조제4항 단서에 따른 계정 간 예수 또는 예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행할 수 있다.

1. 일시적인 자금 부족 등으로 유동성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할 것
2. 계정 간 재무건전성을 해치지 아니할 것

② 계정간 예수 및 예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③ 예수 및 예탁에 따른 이자율 및 기타 조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1. 시장금리 수준
2. 계정별 자금조달 비용
3. 계정별 재무건전성

제26조(적법한 경로의 범위) 법 제45조제2항제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

1. 소송

2.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법령에 근거한 분쟁조정절차에 따른 분쟁조정

제27조(검사) ① 운영위원회는 사장에게 공사의 재무상황, 영업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인회계사의 수가 100인 이상인 회계법인에게 감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사업군 구분) 법 제49조제2항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군”이란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사업군을 말한다.

1. 조선

2. 반도체

3. 의약품

4. 핵심광물

5. 에너지

6.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제29조(과태료 부과 기준)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 전 검토 비용의 지원) 사업관리단이 법 제7조제1항제1호
· 2호 및 제6호의 검토를 위해 이 영 시행 이전에 체결한 외부 용역과
관련하여 공사로부터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직접적 비용의 지원을 받
고자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공사는 영 제14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관련 대금을 지
급할 수 있다.

[별표 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1호	100	250	500
나.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2호	100	250	500

<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전략투자지원과	
연 락 처	(044) 215 - 4951